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공고 제2026-074호

##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7월 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 < 견적 제출 전 주의사항 >

- 본 공고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용진군 대이작도 신요철형어초 제작 및 설치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까지		
주 공 정	토목공사업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공사구분	종합공사	입찰방식	전자입찰
기초금액	금 269,10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업종별 추정금액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69,109,000원 (1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99,610,500원 (74.17%)
			수중준설공사업 69,498,500원 (25.83%)
입찰방식	총액·청림·전자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전자공개 수의계약, 단년도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견적서 제출기한	2026. 7. 8.(수) ~ 2026. 7. 14.(화) 10:00		

## 2. 견적서 제출방식

-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1.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2.1.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2.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2.3.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공사**입니다.
-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가. 국민연금보험료	나. 국민건강보험료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94,700	3,250,410	427,103	4,331,766
마. 퇴직공제부금	바. 품질관리비	사. 안전관리비	합 계 (가+나+다+라+마+바+사)
2,079,539	123,000	1,259,787	15,766,305

※ 상기 제정비(보험료 등)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2.5.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2.6.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2.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2.10.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 3】”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3.1.1.과 3.1.2.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1.3. 본 공사(종합공사)는 전문공사업체가 참가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 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자본금 충족 확인서(협회 발급)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서해본부 안전운영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3.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업체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길 11 별관동 2층,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사업관리실

####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6.2. 입찰보증금
  -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7.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7.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3. 견적서 제출기한 : 2026. 7. 8.(수) ~ 2026. 7. 14.(화) 10:00**

**7.4.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7. 14.(화) 11:00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7.5.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8.1. 본 건은 소액 수의계약으로써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8.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G2B 상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8.3.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에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8.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8.5.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9.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12.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2.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13.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13.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 1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14.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15.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15.1. 이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 16.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16.1.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16.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붙임5】「**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6.3. 계약담당자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가능**

- ※ 준비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가.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7. 기타사항**

- 17.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7.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7.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처 사정 등으로 발주처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7.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7.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자료 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방법
● 공사에 관한 사항	사업감독자 김경택	☎ 063-440-2626
●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자 곽경섭	☎ 063-440-2610
● 전자입찰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법령에 관한 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www.law.go.kr">www.law.go.kr</a>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8.**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였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액 :		
<p>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p>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u>매월 일</u>	<u>매월 일</u>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p><b>제1조(근거)</b>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p>				
<p><b>제2조(정의)</b>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p>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

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예시)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발주자 상황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법인	개인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